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신홍식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홍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, 재위촉, 위촉 해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(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)

○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및 재위촉 금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7조(구성 등)는 현행 제17조제8항을 제9항으로, 제17조제9항을 제8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,
- 안 제17조(구성 등)제8항에서는 현 조례 제17조제9항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제20조제1항제4호를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변경함.

○ 검토 결과

- 현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부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자를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제17조제8항과 제9항이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, 본 개정을 통해 순서를 바로잡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한편, 현 조례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'자치회관의 운영취지, 목적,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'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개정안의 내용처럼 현행보다 재위촉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흥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: 신흥식, 우경란, 김지연
· 양송이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, 재위촉, 위촉 해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(안 제17조제8항, 제9항)

나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차지법」 제12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8. 11. ~ 8. 15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7항 및 제8항”으로, “임기만료된 자도”를 “임기만료된 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9항) 본문 중 “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”를 “제20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20조제1항제5호”를 “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구성 등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연임에 의한 <u>임기만료된 자도</u> 신규 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⑨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<u>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</u>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 다만, <u>제20조제1항제5호</u>에 의한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</p> <p>⑩ ~ ⑫ (생략)</p>	<p>제17조(구성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제7항 및 제8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임기만료된 자는</u> ---- ----- -----.</p> <p>⑧ ----- <u>제20조제1항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0조제1항제4호</u> <u>및 제5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⑩ ~ ⑫ (현행과 같음)</p>